

피 의 자 신 문 조 서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

:

위의 사람에 대한

피의사건에 관하여

검찰청

호 검사실에서 검사

는(은) 검찰주사(보)

를(을) 참여하게 한 후,

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.

문 피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 주거,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.

답 성명은

주민등록번호는

직업은

주거는

등록기준지는

직장 주소는

연락처는

자택 전화 :

휴대 전화 :

직장 전화 :

전자우편(e-mail) :

입니다.

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「형사소송법」 제 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.

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

1.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2.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3.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4.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?

답

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?

답

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?

답

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.

문

답

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?

답 (자필기재)